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4. 1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4. 11.

다. 상정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5. 4. 24.)

상정, 심사, 의결

2. 제출설명의 요지

□ 제출설명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

가. 제출이유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면서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됨.

나. 주요내용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의 수수료 관련 위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5. 3. 20. ~ 2025. 3. 27.(7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원안 동의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신준호)

가. 조례 개정 배경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항목의 관리 대상 조례로 지정됨에 따라 법제처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제출된 사항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의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지역보건법」에서 「지역보건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병기함.
- 안 제2조 제2항의 수수료는 수수료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근거를 명기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관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비 사항으로 판단됨.

- 건강진단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현행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처리 및 외부감사 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음. 아울러, 구민 입장에서 수수료를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에 대한 ‘수납 납득도’가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상위법령과 정부기관 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정비 조치로 다소 수동적이나, 조례의 체계성과 집행의 적법성 제고에 기여하여 보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내 준비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

[관 계 법 령]

「식품위생법」

-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시행일: 2024. 11. 23.]